

#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667호

나. 발 의 자 : 김동욱 의원(찬성자 34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0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04월 03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환경보전사업, 신기술기반사업, 공간개발사업, 지역주력산업, 신성장동력산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·육성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.

나.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행 기관과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(안 제5조~제6조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제정안의 개요

- 제정안은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·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·육성하고,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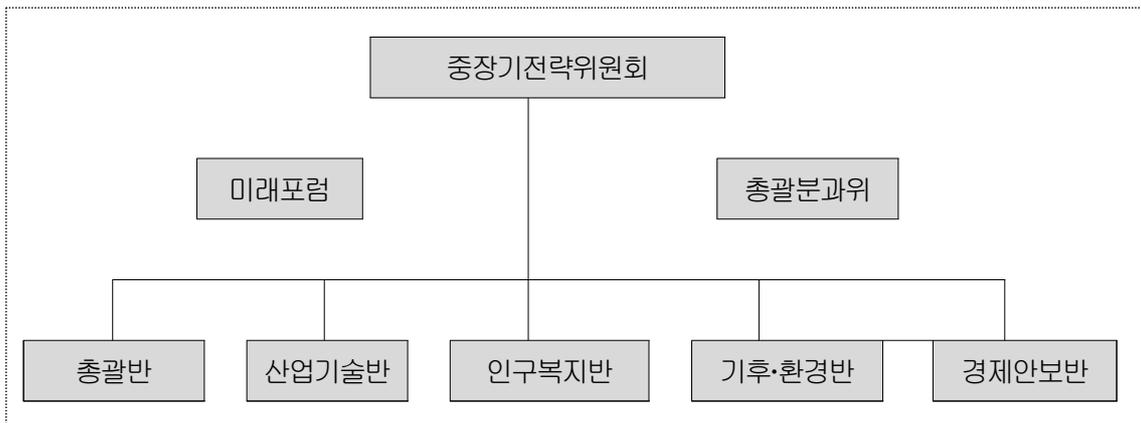
##### 나. 제정안의 입법 배경

- 우리나라는 산업화,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·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음.
- 그러나,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체, 사회갈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, 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임.
- 특히 4차 산업혁명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, 인구감소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과제가 급증하고 있음.
- 이에 중·장기 관점에서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등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사전적으로

준비할 필요가 있음<sup>1)</sup>.

-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통해 산업·인구·에너지 등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.
- 위원회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기술, 인구복지, 기후환경, 국제관계 등 핵심 변화 동인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경제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.

#### <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 >



- 지난 3월에는 창조적 혁신을 통한 국가시스템 개혁과 경제성장 경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▶산업, ▶인재, ▶국가안전망, ▶국가 거버넌스 등의 혁신을 담은 “국가미래전략” 핵심 분야 중·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함.
- 제정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

1) 민보경 외(2022.12.),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, 국회미래연구원.

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.

## 다. 조례안의 세부 내용

### (1) 목적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확립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도시경쟁력 제고를 제시함.
- 서울시의 대내·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, 문화, 환경, 시민, 인프라, 여가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함.

### (2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미래전략과제’를 “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”로 ‘지속가능한 발전’은 “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제,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”으로 각각 정의함.
-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

조화롭게 조례에 규정하여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됨.

### (3) 미래전략과제의 범위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미래전략과제 적용 범위를 ▶ 환경보전, ▶ 신기술기반, ▶ 공간개발, ▶ 지역주력, ▶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, 사회, 산업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전략과제 범위를 설정함.

### (4)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됨.

(5)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5조·안 제6조)

- 안 제5조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▶국공립 연구기관, ▶출자·출연·보조 연구기관이나 법인, ▶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, ▶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, ▶중앙부처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, ▶분야별 산업 종사자 협회, 조합, 단체 등으로 규정함.
- 안 제6조는 미래전략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▶주요 시책 개발, ▶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, ▶지속가능 발전 확립, 확산 및 보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기술의 융·복합화로 미래전략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음.
- 또한,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5조제4호의 직업전문학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

하는 기관으로,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함.

### 라. 종합의견

- 제정안은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·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다만, 안 제8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함.
- 또한,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,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.

### <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정의견
<p>제5조(지원대상)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<u>대학 및 직업전문학교</u></p>	<p>제6조(지원대상) ----- <u>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대학</u></p>

제 정 안	수정의견
5. ~ 7. (생 략)  <u>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 1. ~ 4. (생 략)  제8조 (생 략)	5. ~ 7. (제정안과 같음)  <u>제7조(지원사업) -----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----- 사업을 -----</u> ----- ----. 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  제5조 (제정안 제8조와 같음)

- 한편, 제정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과제의 범위는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에 따른 기본 계획·이행계획, 중·장기 행정계획과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전략산업과 종합지원계획 등과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 유사 조례들 간에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